2026. 10.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의 책임 및 증명기준 제시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규모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그러나 생성 결과가 기존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하거나 선행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인공지능 개발자·제공자·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학습데이터의 출처,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의 과정, 모델의 운영방식 및 침해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등은 대체로 개발자 또는 제공자의 지배 영역에 속하므로, 권리자가 침해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AI가 콘텐츠를 생성하였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관련 주체 가운데 어느 누구의 책임도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주체의 통제 가능성과 주의의무,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배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9월 7일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의 적법한 심리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法发〔2026〕10号, 이하 '이 의견')을 발표·시행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국가 최고 재판기관이 발표한 최초의 인공지능 관련 사법재판규칙 문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총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견 가운데, 제12조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며, 제17조·제18조는 이를 보완하는 증거조사·증거심사 절차를 규정한다.

아래에서는 의견 제12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생성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판단요소, 개발자·제공자·이용자 사이의 책임 배분, 그리고 학습데이터 및 모델 운영정보에 관한 증명규칙을 소개한다. 또한 의견이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무단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행위에 관한 저작권법상 평가를 유보한 의미를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1) 「의견」의 구성과 저작권 관련 규정의 위치

의견은 총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1부(제1조·제2조)는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 심리의

지도사상과 인간 중심, 혁신발전 지지, 안전기반 구축(坚持以人为本·支持创新发展·筑牢安全防线)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2부(제3조-제11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제3부(제12조-제16조)는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제4부(제17조-제20조)는 사실인정·증거심사 절차 및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제5부(제21조-제24조)는 재판지도·분쟁예방·부처 간 협력체계를 각각 규정한다.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핵심 규정은 제3부의 제12조이며, 제17조와 제18조는 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기술적·전문적 특성을 고려한 사실인정 및 증거심사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증명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보완적 기준을 제시한다. 의견은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전·저작권법·데이터안전법·반부정당경쟁법·개인정보보호법·민사소송법 등 기존 법률을 인공지능 관련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지침이다. 따라서 의견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나 권리제한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책임 판단과 증거조사를 위한 재판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AI 생성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제12조)

의견 제12조는 인공지능 생성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AI가 생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주체가 당연히 면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법원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 업종 특성, 학습데이터의 출처, 각 당사자의 참여 정도,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수익 취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자·제공자·이용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주체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발자에게는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훈련·운영 방식, 모델 설계 및 침해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책임이,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제공방식, 생성콘텐츠에 대한 통제 가능성 및 자신의 통제 범위에서 취할 수 있는 위험관리조치와 관련한 책임이, 이용자에게는 특정 기존 저작물을 재현·모방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입력, 생성결과의 선택·수정·공개·유통 등 구체적 행위와 관련한 책임이 각각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제12조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상표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허위광고·조회수 조작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중 저작권 관련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12조가 제시하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판단요소	저작권 침해책임 판단에서의 의미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	범용 인공지능 모델인지, 특정 콘텐츠 생성에 특화된 서비스인지
업종 특성	콘텐츠의 생성·유통 구조, 사업모델 및 이용자 관여 방식
학습데이터의 출처	데이터의 취득·이용 경위, 침해 위험의 예견 가능성 및 개발자의 주의의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각 당사자의 참여 정도	개발·운영·프롬프트 입력·결과물 편집·배포에 대한 관여 정도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개발자·제공자 등이 침해위험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통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이행 정도
수익 취득 상황	침해적 콘텐츠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직접적·간접적 이익

이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의견은, AI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AI를 이용해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고, 정당한 항변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기존 저작물의 권리자가 침해책임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한다(제12조). 이는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침해 콘텐츠 생성을 유도한 이용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제7조의 법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결국 AI를 이용한 생성 행위라도 이용자의 인식과 구체적 행위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 침해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3) 증명규칙과 정보 비대칭(제12조·제17조·제18조)

AI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는 권리자가 모델의 내부구조, 학습데이터, 데이터 정제·처리 과정 및 운영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의견 제12조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기초사실 증명과 개발자의 비침해 항변 소명을 구분하는 단계적 증명구조를 규정한다. 권리자가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자 또는 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침해가 주장되는 내용이 해당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점 및 자신의 권리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등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다만 제12조 원문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 증명사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위 두 요소는 일반 저작권 침해소송의 법리에 비추어 도출되는 사실관계로 이해된다). 반면 인공지능 개발자가 비침해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학습데이터의 출처, 학습과정 기록, 모델의 운영방식 및 필요한 경우 관련 과학적·이론적 근거를 제출하여 항변을 소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정 증명책임을 일률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정보를 지배하는 개발자에게 보다 강한 설명·소명 부담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견 제17조는 당사자가 객관적 사유로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술증거의 보전신청은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문서·전자데이터를 지배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해당 증거가 제출거부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는 AI 생성 콘텐츠가 침해증거로 제출된 경우, 프롬프트의 설계와 생성결과에 미친 영향, 생성된 콘텐츠와 권리저작물의 유사 정도, 반복 테스트의 일관성, 모델 학습·알고리즘 설계·생성 콘텐츠 필터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다. 이는 AI 생성 결과에 대한 단순 비교를 넘어, 생성 과정과 기술적 통제구조를 포함하여 증거의 신빙성과 침해 관련성을 판단하려는 규정이다.

4) 유보된 두 쟁점

최고인민법원은 의견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의 저작권법상 평가에 관하여는 이번 의견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 두 문제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크고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첫째,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문제이다. AI가 생성한 텍스트·이미지·음악·영상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 경우 누가 저작자가 되는지, 이용자의 프롬프트 설계·매개변수 조정·결과물 선택과 수정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창작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은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무단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행위의 저작권법상 평가 문제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의 저작권법상 성격과,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번 의견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는 AI 학습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한 일반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논의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하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공정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확정의 쟁점이다.

제12조가 훈련데이터의 출처를 책임 판단 요소로 든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학습데이터 이용이 원칙적으로 적법하거나 위법하다는 일반적 결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는 AI 생성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개발자·제공자·이용자의 통제 가능성, 주의의무, 과실 및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의견의 가장 큰 의의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AI가 생성하였다'는 사정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개발자·제공자·이용자의 통제 가능성, 주의의무, 생성 과정에 대한 참여 정도 및 수익 취득 상황에 따라 책임을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AI의 자율성이나 기술적 복잡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공백을 방지하고, AI 생태계의 각 참여자에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관리 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권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학습데이터와 모델의 학습·운영 과정에 관하여, 개발자가 비침해 항변을 할 때 관련 자료와 과학적·이론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AI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증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의견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무단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행위의 적법성을 유보하였다. 필자는 이를 AI 저작권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두 문제에 관한 해답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판례 축적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반적 기준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은 신중한

사법정책의 선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물성 및 학습데이터 이용의 적법성은 저작권 보호범위, 합리적 이용, 데이터 이용허락 시장, 창작자 보상 및 AI 산업혁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국의 최고 재판기관조차 아직 통일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쟁점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에서 학습데이터, 모델의 운영기록 및 생성기록과 같은 핵심 기술증거가 개발자·제공자에게 편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증거조사 및 설명의무를 실효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성형 AI 제공자의 책임은 모든 생성 결과에 대한 무제한의 사전심사의무가 아니라, 서비스의 유형과 기능, 침해 위험의 예견 가능성, 기술적 통제 가능성, 권리침해 통지 후의 조치 및 반복침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가 특정 기존 저작물을 재현·모방하도록 인공지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생성 결과를 공개·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아 기존 저작권 침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학습데이터 이용의 적법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두 쟁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최고 재판기관조차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일부 판결이나 정책문서를 성급히 일반화하기보다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데이터 취득의 적법성, 이용 목적과 범위, 시장대체 효과 및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결국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이 의견은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완결된 해답이라기보다, 생성형 AI 침해분쟁에서 우선 해결이 필요한 책임 배분과 증거 확보의 문제를 구체화한 사법적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중국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하여 학습데이터 출처의 제출 범위, 개발자·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수준, 이용자의 침해 인식 및 생성된 콘텐츠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法发〔2026〕10号(2026. 9. 7. 발표).
- 最高人民法院发布〈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https://mp.weixin.qq.com/s/caB_-bRuXtg2VZxiA3S5Tw